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7.

발 의 자 : 이성권 · 조은희 · 강명구  
김용태 · 이종욱 · 이현승  
신성범 · 정성국 · 김 건  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, 차량,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.

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(高所)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·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


법률 제 호

##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그”를 “고소(高所) 작업대 등 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방대상물”이란 건축물, 차량, 선박(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)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<u>그 밖의</u>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소(高所) 작업대 등 그</u>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